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-1489호

(정정)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75호(2011.06.30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영등포구 고시 제2017-57호(2017.07.06.), 영등포구 고시 제2023-30호(2023.03.09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(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)에 의거 공람공고 하오니, 본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및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7월 24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※ 양평동 1가 20번지 일대 ‘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’ 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-1328호(2025.07.10.)」 로 기 공고한 바 있으나,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공고합니다.

■ 정정 내용

항목	영등포구 공고 제2025-1328호 p.7-8 용적률 산정 계획(변경)(안) ▶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▶ 열린단지
정정 전	1. 연도형상가 - 송파대로변 연도형상가 계획으로 가로활성화 및 가락시장역 역세권 활성화 - 연도형상가 사잇길을 계획하여 공간적 열림동선 계획 2. 담장미설치 - 공공보행통로 시·중점 개방 - 송파대로변, 동남로2길, 동남로, 중대로에 면한 단지 전면개방
정정 후	1. 연도형상가 - 영등포로변, 선유서로변에서 직접접근이 가능한 연도형상가 계획으로 가로활성화 2. 담장미설치 - 영등포로변, 선유서로변, 문래북로변, 영등포로12길변에 면한 단지 전면개방

※ 본 정정 내용 외 기타 사항은 기존 공고문과 동일함.

가.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: 2025. 7. 10. ~ 2025. 8. 11.(30일 이상)

나. 공람장소

-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(영등포구 당산로 123, 본관 4층, ☎ 02-2670-3501)
-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(영등포구 문래로 79-17 202호, ☎ 02-2635-2766)

다. 공람사유: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

라. 공람내용: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
※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및 공람 장소에 비치

마. 기타사항: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예정 세대 수, 기타 계획내용 등은 추후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바.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
1. 정비사업의 명칭: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(변경없음)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변경없음

구분	정비구역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20,619.0	-	20,619.0	-

3. 정비사업의 계획(안)

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)(안)

구 분		면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총계		20,619.0	-	20,619.0	100.0	-
획지	소계	18,383.0	증) 1,912.0	20,295.0	98.4	-
	획지1	18,383.0	증) 1,912.0	20,295.0	98.4	공동주택 및 부대복시시설, 근린생활시설
정비기반시설	소계	2,236.0	감) 1,912.0	324.0	1.6	-
	도로	868.0	감) 544.0	324.0	1.6	-
	소공원	1,368.0	감) 1,368.0	-	-	-

나. 용도지역·지구 계획

1)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	면적(㎡)		
		기정	증감	변경후
합계		20,619.0	-	20,619.0
공업지역	준공업지역	20,619.0	-	20,619.0

2) 용도지구 : 해당없음

다. 도시계획시설(정비기반시설)의 설치에 관한 계획(변경)(안)

1) 교통시설

가) 도로 결정(변경)조서(안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유형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1	1	20-23	국지도토	184	문래동 1가	문래동 1가	일반 도로	-	서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	완화차로(3m) 112m
변경	중로	1	1	20-21	국지도토	184 (0)	문래동 1가	문래동 1가	일반 도로	-	서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	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, 구역계획
기정	중로	2	1	18	국지 도로	113	양평동 2가	양평동 2가	일반 도로	-	서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	-
변경	중로	2	1	18	국지 도로	113 (113)	양평동 2가	양평동 2가	일반 도로	-	서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	-
기정	중로	3	1	12	국지 도로	113	양평동 1가	양평동 1가	일반 도로	-	서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	-
변경	소로	1	A	10	국지 도로	113 (0)	양평동 1가	양평동 1가	일반 도로	-	서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	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, 구역계획

※ (): 구역내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1-1	중로1-1	• 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	• 기존 도로에 대하여 보도형 전면공지로 기능을 대체조성함
중로2-1	중로2-1	• 구역 내 연장 정정 • 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	• 기존 조서 오기 정정 • 도로선형 변경
중로3-1	소로1-A	• 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	• 보도형 전면공지로 보행로 기능 대체

2) 공간시설

가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(안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 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①	공원	소공원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1,368.0	감) 1,368.0	-	서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	-

■ 공원 결정(변경)사유서

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변경사유
소공원①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1,368.0	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필요시설로 대체조성함

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)(안)

■기정

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비고
공동이용시설	경로당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260.00	225.00㎡ 이상
	어린이놀이터		300.00	-
	주민공동시설		1,013.40	-
	주민운동시설		300.00	-
	보육시설 ¹⁾		350.00	330.00㎡ 이상
	문고 ¹⁾		195.00	158.00㎡ 이상
	소계 ²⁾		2,418.40	(2.5㎡×563세대)×1.25= 1,759.38㎡
	경비실		60.00	-
	관리사무소 ³⁾		197.00	-
	근린생활시설		3,070.00	-

주1) 서울시 주택조례[별표1] -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 면적기준

: 500-1,000세대 미만인 경우 경로당은 225㎡ 이상, 어린이집은 330㎡ 이상, 작은도서관은 158㎡ 이상

주2)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(주민공동시설)제1항1호: 100세대 이상 - 1,000세대 미만: 세대당 2.5㎡를 더한 면적×1.25

주3)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(관리사무소)제1항: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㎡에 5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 500㎡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<이하 여백>

■변경(안)

시설 구분	시설의 종류	법정기준	법정면적(㎡)	계획면적(㎡)	비고
계		-	2,428.13㎡ 이상	3,251.00㎡	-
주민 공동 시설	소개	[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] 777세대(중세대수) $\times$ 2.5㎡ $\times$ 1.25㎡ 이상 설치	2,428.13㎡ 이상	3,251.00㎡	-
	경로당	[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] 500 ~ 1,000세대 미만	330.00㎡ 이상	330.00㎡	-
	어린이집	[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] 500 ~ 1,000세대 미만	330.00㎡ 이상	350.00㎡	-
	작은도서관	[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] 500 ~ 1,000세대 미만	158.00㎡ 이상	190.00㎡	-
	다함께돌봄센터	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] 500세대 이상의 경우 설치	66.00㎡ 이상	651.00㎡	-
	주민공동시설	-	-	520.00㎡	-
	주민운동시설	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] 500세대 이상의 경우 설치	-	220.00㎡	-
	어린이놀이터	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] 150세대 이상의 경우 설치 [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] -300 ~ 1,000세대 미만 -200㎡에 세대당 1㎡를 더한 면적	977㎡ 이상	990.00㎡	-
	관리사무소	[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] 10㎡ + (중세대수-50) $\times$ 0.05㎡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㎡를 초과할 경우, 100㎡로 설치가능	46.35㎡	200.00㎡	-
	경비실	-	-	60.00㎡	-
	근로자휴게실	-	-	50.00㎡	-

※ 주민 공동시설 설치기준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였으며, 향후 사업승인시 확정

마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(변경)(안)

1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(변경)(안)

결정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·개량 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기정	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20,619.0	획지1	18,383.0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5	-	-	5	-	-
변경	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20,619.0	획지1	20,295.0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5	-	-	5	-	-

2) 건축시설계획(변경)(안)

■기정

결정 구분	구역 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(%)		높이(m) 최고층수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정비 계획	법적 상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정	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20,619.0	획지1	18,383.0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25% 이하	250 이하	299.94 이하	90m이하/ 최고 30층 이하	-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•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<table><tr><th colspan="3">구분</th><th>세대수</th><th>비율(%)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 colspan="3">계</td><td>563세대</td><td>100.0</td><td>-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공동 주택</td><td rowspan="2">35㎡ 이하</td><td>60㎡ 이하</td><td>221세대 (소형주택 46세대 포함)</td><td>39.3</td><td rowspan="2">총 건립세대수의 80%이상</td></tr><tr><td>60㎡~ 35㎡ 이하</td><td>342세대 (소형주택 10세대 포함)</td><td>60.7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35㎡초과</td><td>-</td><td>-</td><td>총 건립세대수의 20%미만</td></tr></table> - 35㎡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: 100.0%												구분			세대수	비율(%)	비고	계			563세대	100.0	-	공동 주택	35㎡ 이하	60㎡ 이하	221세대 (소형주택 46세대 포함)	39.3	총 건립세대수의 80%이상	60㎡~ 35㎡ 이하	342세대 (소형주택 10세대 포함)	60.7	35㎡초과		-	-	총 건립세대수의 20%미만
구분			세대수	비율(%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		563세대	100.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동 주택	35㎡ 이하	60㎡ 이하	221세대 (소형주택 46세대 포함)	39.3	총 건립세대수의 80%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60㎡~ 35㎡ 이하	342세대 (소형주택 10세대 포함)	60.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5㎡초과		-	-	총 건립세대수의 20%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심의완화 사항		• 예정법적상한용적률 : 299.94% •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 : 1.5D → 1.65D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• 북측 영등포로(30m)변 10m, 동측 영등포로12길(12m)변 3m, 서측 선유서로(18m)변 3m, 남측 문래북로(23m)변 3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■변경(안)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(%)		높이(m) 최고층수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정비 계획	법적 상한																									
변경	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거재건축 정비구역	20,619.0	획지1	20,295.0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% 이하	253.00 이하	399.99 이하	160m이하/ 최고 49층 이하	-																							
주거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					• 주거공급계획 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세대수</th><th>비율(%)</th><th>비고(공공일대)</th></tr><tr><td colspan="2">계</td><td>777세대</td><td>100.0</td><td>201세대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공동 주택</td><td>60㎡이하</td><td>361세대</td><td>46.4</td><td>171세대</td></tr><tr><td>60㎡~85㎡이하</td><td>396세대</td><td>51.0</td><td>30세대</td></tr><tr><td>85㎡초과</td><td>20세대</td><td>2.6</td><td>-</td></tr></table>							구분		세대수	비율(%)	비고(공공일대)	계		777세대	100.0	201세대	공동 주택	60㎡이하	361세대	46.4	171세대	60㎡~85㎡이하	396세대	51.0	30세대	85㎡초과	20세대	2.6	-
구분		세대수	비율(%)	비고(공공일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	777세대	100.0	201세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동 주택	60㎡이하	361세대	46.4	171세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0㎡~85㎡이하	396세대	51.0	30세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85㎡초과	20세대	2.6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심의완화 사항					• 용적률완화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) - 상한용적률(253.00%) → 법적상한용적률(399.99%)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		• 북측 영종포토면 10m • 동측 영종포토12길면 3m • 서측 선유서로면 3m • 남측 문래푸트면 3~6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사항에 관한 계획	전면공지		• 보도형 공지 - 북측 영종포토면 3m - 동측 영종포토12길면 3m - 남측 문래푸트면 3~6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공개공지		• 선유서로 ~ 문래푸트면 공동주택 부지 내 보행 공간점(1개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용적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「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상 '사업성 보정제수'에 따라 조정함

※ 주거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

※ 공개공지는 부후 건축심의시 위치, 유형, 형태, 면적 등을 결정함

<이하 여백>

3) 용적률 산정 계획(변경)(안)

■기정

구분	산정내용				
토지이용계획	계(구역면적)	대지면적	계획 정비기반시설	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	비고
	20,619.0㎡	18,383.0㎡	2,236.0㎡	29.0㎡	-
공공시설부지 중 제공면적 (순부담면적)	-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-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·공유지면적 - 계획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·공유지면적 $= 2,236.0\text{㎡} - 29.0\text{㎡} = 2,207.0\text{㎡}$ (구역면적 대비 10.7%)				
정비계획 용적률	- 기준용적률 = 210% - 허용용적률 = 계획용적률 + B = 210% + 9% = 219% (B: 지능형 건축물 3등급: 9%) -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+ 계획용적률 × (1.3a) $= 219\% + (210\% \times 1.3 \times 0.120057)$ $= 251.77\%$ $\%a = 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} / 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}$ $= 2,207.0\text{㎡} / 18,383\text{㎡} = 0.120057$				
법정상한 용적률 용적률	- 법정상한용적률 : 299.94% 이하 ※법정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결정된 해당법정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 해 확정함				

■변경(안)

구분	산정내용							
토지 이용 계획	계 (구역면적)	획지면적	공공시설 제공면적			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·공유지	부상 양도국· 공유지	비고
			계획정비 기반시설	공공임대주택 환산면적				
		획지1	도로	지분	임대주택 환산부지			
	20,619.0㎡	20,295.0㎡	324.0㎡	642.5㎡	533.7㎡	-	51.4	-
공공시설부지 중 제공면적 (순부담)	• 공공시설 제공면적 -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- 획지내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국공 유지 면적 = (324.0㎡ + 642.5㎡ + 533.7㎡) - 0㎡ - 51.4㎡ = 1,448.8㎡ (7.0%)							
계획(기준) 용적률	• 210%							
허용용적률 적용기준	구분	인센티브 용적률	비고					적용
	합계	최대20% 이내	• 적용 20%					• 20%
	열린단지	5% 이내	• 단지 외곽개발, 단장 미설치,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 (지형도면 고시) 1. 연도형상가 - 영등포로변, 선유서로변에서 직접접근이 가능한 연도형상가 계획으로 가로활성화					• 5% 적용

		2. 담장미설치 - 영등포로변, 선유서로변, 문래북로변, 영등포로12길변에 면한 단지 전면개방 3. 그 외 - 공공공지 제책으로 외부이용이 가능한 휴식공간 조성 ※ 건축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	
돌봄시설	5% 이내	• 지역에 필요한 놀이·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(무상임대) - 기준용적률 × (조성면적(의무면적 제외) / 주민공동시설면적(의무면적) × a ※ a=0.1이하 적용, 심의시 a값 확정 ※ 건축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	• 5% 적용
공간소용 해소	5% 이내	• 바닥(공방)층격을 차단성능 2등급 이상 - 1등급 5%, 2등급 3%	• 3% 적용
친환경 건축물	7.5% (15%) 이내	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- ZEB1 7.5%(15%), ZEB2 7%(14%), ZEB3 6.5%(13%), ZEB4 6%(12%), ZEB5 5.5%(11%) 에너지효율 1++ 3%(6%), 에너지효율 1+ 1.5%(3%) ② 녹색건축 인증 - 최우수 등급 3%(6%), 우수 등급 1.5%(3%) ※ 친환경 항목 및 인센티브항목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변경 시 연동 ※ ①, ② 중복적용 가능 - 단, ①, ② 동일 세부항목은 상한/하중에 동시 적용 불가 ※ 법률·정책상 의무화시 미적용 ※ ()는 보정계수를 적용했을 때 최대 친환경 인센티브항목	• 7% 적용
•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「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상 「사업성 보정계수」에 따라 조정 •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(210%) + (인센티브(20%) × 사업성 보정계수(1.15)) = 233.0% ※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(열린단지, 돌봄시설, 공간소용해소, 친환경건축물)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며,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- ① 공시지가 보정계수 =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 ÷ 재건축사업구역 평균 공시지가 = 7,274.646원/㎡ ÷ 6,347,000원/㎡ = 1.146 - ② 대지면적(2만㎡미만 단지) = 해당없음 - ③ 세대밀도(가용용적률 전체를 조합원분양해도 세대당 평균 전용85㎡ 공급 불가능) = 해당없음 - 사업성 보정계수: ① + ② + ③ = 1.15 ∴ 허용용적률 = 210% + 23.0% = 233.0% (20% x 1.15 = 23.0%)			
정비계획 용적률 산정	• 상한용적률 = [233.00%+(230.00%×1.3×가공치×a토지+230.00%×1.0×β건축물(공공주택))] = 253.17% (253.00% 이하 적용) • 정비계획용적률 : 399.99% = 가공치를 포함한 허용용적률+(가공치를 제외한 허용용적률×1.3×가공치×a토지+가공치를 제외한 허용용적률×1.0×β건축물(공공주택)) = 233.0%+(230.0%×1.3×1×0.0466+230.0%×1.0×0.0272) = 253.17% (253.00% 이하 적용)		

	$\alpha(\text{토지}) = 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} / 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}$ $= 915.1 / 19,652.5 = 0.0466$ $\beta(\text{건축물}) = \text{공공시설부지 부지(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) 제공면적} / \text{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}$ $= 533.7 / 19,652.5 = 0.0272$
법적상한 율	399.99%이하 ※ 법적상한율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법적상한율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됨
국민주행규모 구축건립 율	73.49%이상 ※ (법적상한율 - 상한율) × 50% = (399.99% - 253.00%) × 50% = 73.49%

※ 허용율과 상한율은 「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, 상·사업성 보정 계획」에 따라 조정함

※ 허용율 인센티브 적용률 및 인정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,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역률이 변경될 수 있음

4) 허용율 인센티브(변경)(안)

■기정

구분			기정	비고
항목		인센티브		
합계			9%	-
녹색건축물 에너지등급	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,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	3%	-	-
	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,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	3%	-	-
신·재생에너지 공급률 (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)	20% 초과	3%	-	-
	20% 이하 ~ 15% 초과	2%	-	-
	15% 이하 ~ 10% 초과	1%	-	-
지능형 건축물	3등급	9%	9%	-
	4등급	6%	-	-

※ 위의 제시된 허용율 인센티브 항목은 허용율 완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함.

※ 허용율 인센티브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, 건축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역률이 변경될 수 있음

<이하 여백>

■변경(안)

구분	항목		변경(안)	비고
합계			20%	-
보행공심 생활공간조성	열린단지	- 단지의곽개방, 담장미설치, 연도형 상가등 열린 단지 조성(지형도면고시) - 개방공간,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(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)	5%	최대 5% 이내
세대맞춤형 생활환경개선	돌봄시설	- 지역에 필요한 놀이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(부상일대) - 기준용적률×(조성면적(의부면적제외) / 주민공동시설면적(의부면적)) × a = 210%×(535.0m/2,440.6m)×0.1 = 5.03% ※ a = 0.1이하 적용, 심의시 a값 확정 ※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	5%	최대 5% 이내
	공간소음 해소	- 바닥(중량)충격을 차단성능 2등급 이상 - 1등급 5%, 2등급 3%	3%	최대 5% 이내
환경친화 안전한주거지 조성	친환경건축물	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- ZEB1 7.5%(15%), ZEB2 7%(14%), ZEB3 6.5%(13%), ZEB4 6%(12%), ZEB5 5.5%(11%) 에너지효율 1++ 3%(6%), 에너지효율 1+ 1.5%(3%) ② 녹색건축 인증 - 최우수 등급 3%(6%), 우수 등급 1.5%(3%) ※ 친환경 항목 및 인센티브량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변경 시 연동 ※ ①, ② 중복적용 가능 - 단, ①, ② 동일 세부항목은 상한/하중에 동시 적용 불가 ※ 법률·정책상 의무화시 미적용 ※ ()는 보정계수를 적용했을 때 최대 친환경 인센티브량	7%	최대 7.5% (15%) 이내

*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, 건축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

바.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)(안)

구분	건립위치	부지면적 (㎡)	동수	연면적 (㎡)	세대수	세대규모(전용)	비고
기정	양평동1가 20번지일대	-	-	4,652.44	56	49.89㎡ : 12세대 59.89㎡ : 34세대 74.79㎡ : 5세대 84.79㎡ : 5세대	의무 연면적 : 4,590.24㎡ 이상
변경 (안)	양평동1가 20번지일대	-	-	14,984.77	174	49.99㎡ : 11세대 59.99㎡ : 144세대 74.99㎡ : 14세대 84.99㎡ : 5세대	의무 연면적 : 14,915.69㎡ 이상

■재건축소형주택 비율 산정(기정)

구분	내용				
정비계획용적률	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현 용적률의 50%를 소형주택 건설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예정법적상한용적률</td><td>• 299.94%</td></tr> <tr> <td>정비계획용적률</td><td>• 250.0%이하</td></tr> </table>	예정법적상한용적률	• 299.94%	정비계획용적률	• 250.0%이하
예정법적상한용적률	• 299.94%				
정비계획용적률	• 250.0%이하				
증가된 용적률의 50%	$(\text{예정법적상한용적률} - \text{정비계획 용적률}) \times 50\%$ $= (299.94 - 250.00) \times 50\% = 24.97\% \text{ 이상}$				
연면적 환산	$\{(\text{상한용적률} - \text{정비계획용적률}) \times 50\% \} \times \text{대지면적}$ $= \{ (299.94 - 250.00) \times 50\% \} \times 18,383\text{m}^2 = 4,590.24\text{m}^2 \text{ 이상}$				
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	- 연면적 : 4,652.44m² - 세대수 : 12세대 (전용면적 49.89m², 공용면적 19.71m², 공급면적 69.60m²) 34세대 (전용면적 59.89m², 공용면적 21.87m², 공급면적 81.76m²) 5세대 (전용면적 74.79m², 공용면적 23.20m², 공급면적 97.99m²) 5세대 (전용면적 84.79m², 공용면적 24.70m², 공급면적 109.49m²)				

* 전용 및 공용, 공급면적은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, 건축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■재건축소형주택 비율 산정(변경)(안)

구분		주요내용 표지1			
법적상한용적률		• 399.99%이하 ※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됨			
정비계획용적률		• 상한용적률 : 253.00% • 정비계획 용적률 : 399.99% = 가공치를 포함한 허용용적률+(가공치를 제외한 허용용적률×1.3×가공치×α토지 +가공치를 제외한 허용용적률×1.0×β건축물(공공주택)) = 233.00%+(230.00%×1.3×1×0.0466+230.0%×1.0×0.0272) = 253.17% (253.00% 이하 적용)			
국민 주택 규모 주택 의부 면적	용적률 증가분	• 146.9888% = 법적상한용적률 - 상한용적률 = 399.9888% - 253.0000%			
	증가된 용적률의 50%	• 73.4944%이상			
	의부 연면적	• 14,915.69㎡이상 = 73.4944% × 20,295.0㎡			
재건축국민주택 규모 주택 확보계획		전용면적	세대수	연면적(공급면적)	비 고 의부연면적 : 14,915.69㎡
		49.99㎡ (공급면적 70.6283㎡)	11세대	14,984.77㎡	
		59.99㎡ (공급면적 84.1766㎡)	144세대		
		74.99㎡ (공급면적 105.7991㎡)	14세대		
		84.99㎡ (공급면적 121.0474㎡)	5세대		

*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,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(동형동대 혼합과 승형혼합)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·호수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(임대주택)가 동일 동시에 공개추첨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(공공주택과)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

사.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(변경)(안)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세대수			비고
				현황	증감	계획	
기정	관리처분	구역지정 후 4년 이내	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	513세대	증) 50세대	563세대	-
변경	관리처분	구역지정 후 4년 이내	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	513세대	증) 264세대	777세대	-

4.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(신설)(안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신설)(안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-	증) 20,619.0	20,619.0	-	-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)(안)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(안)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-	-	20,619.0	100.0%	-
공업 지역	소계	-	증) 20,619.0	20,619.0	100.0%	-
	준공업지역	-	증) 20,619.0	20,619.0	100.0%	-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	위치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변경	-	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	정비사업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

2) 기반시설 결정 조서(변경)(안)

가) 교통시설

(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(안)
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(안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2	1	18	국지 도로	113	양평동 2가 5	양평동 2가 1-1	일반 도로	-	서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	-
변경	중로	2	1	18	국지 도로	113 (113)	양평동 2가 5	양평동 2가 1-1	일반 도로	-	서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	-

※ (): 구역 내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2-1	중로2-1	- 구역 내 연장 정정 - 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	- 기존 조서 오기 정정 - 도로선형 변경 - 기결정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구단위구역 내 포함

나) 공간시설
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(안)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 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 지	①	공원	소공원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1,368.0	감) 1,368.0	-	서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	-

■ 공원 결정(변경)사유서

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변경사유
소공원①	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1,368.0	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필요시설로 대체조성함

다.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조서(신설)(안)

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신설)(안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필지		비고
				위치	면적(㎡)	
신설	1	1	20,295.0	양평동 1가 20번지	20,295.0	공동주택 용지

2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(신설)(안)

가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(신설)(안)

■ 허용용도(신설)(안)

구분		가구 번호	용도	비고
신 설	허용용 도	1	-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2호의 공동주택 -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- 「건축법 시행령」 [별표1] 제3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	허용용도 외 용도는 불허

나) 건축물 개발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(신설)(안)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

■ 건폐율 계획(신설)(안)

구분	건폐율	비고
준공업지역	60%이하	공동주택 용지

■ 용적률 계획(신설)(안)

용도지역	가구 번호	용적률				비고	
		기준	허용	상한			
				상한	법정상한		
준공업지역 (공동주택 용지)	1	210.0% 이하	233.0% 이하	253.00% 이하	399.99% 이하	정비 계획	허용: 233.00% 이하
							상한: 253.00% 이하
							법정상한: 399.99% 이하

-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시 용적률 체계

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상한용적률	법정상한용적률
210.00% 이하	233.00%이하	253.00%이하	400%이하

- ① 공시지가 보정계수 =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 ÷ 재건축사업구역 평균 공시지가
= 7,274,646원/㎡ ÷ 6,347,000원/㎡ = 1.146
- ② 대지면적(2만㎡미만 단지) = 해당없음
- ③ 세대밀도(가용용적률 전체를 조합원분양해도 세대당 평균 전용85㎡ 공급 불가능)
= 해당없음
- 사업성 보정계수: ① + ② + ③ = 1.15
∴ 허용용적률 = 210% + 23.0% = 233.0% (20% x 1.15 = 23.0%)

-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

가구 번호	인센티브				비고
	열린단지	돌봄시설	충간소음해소	친환경건축물	
1	5%	5%	3%	7%	최대 20% 적용

※ 서울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관련 지침 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

- 상한(법적상한)용적률 완화 사항

구분	가구번호	용적률 완화		비고
		공공시설 등 기부채납	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	
신설	1	19.99%	73.49%	-

■ 높이 계획(신설)(안)

구분	가구번호	지역	높이기준	비고
신설	1	준공업지역	최고 160m이하 (최고 49층이하)	-

3)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(신설)(안)

구분	가구번호	적용위치	계획내용	비고
건축한계선	1	도면참조	- 북측 영등포로변 10m - 등측 영등포로12길변 3m - 서측 선유서로변 3m - 남측 문래북로변 3~6m	-

4)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(신설)(안)

가)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(신설)(안)

구분	가구 번호	적용위치	계획내용	비고
전면공지	1	도면참조	쾌적한 통행여건 조성을 위한 전면공지 계획 - 북측 영등포로변 3m(보도형) - 등측 영등포로12길변 3m(보도형) - 남측 문래북로변 3~6m(보도형)	-
공개공지	1	도면참조	주민주식공간 조성을 위한 보행 결절점에 공개공지 계획(1개소)	-

※ 공개공지는 추후 건축심의시 위치, 유형, 형태, 면적 등을 결정함

나)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(신설)(안)

구분	적용위치	계획내용	비고
차량통선 계획	- 남측 주진출입구(문래북로) - 동측 부진출입구(영등포로12길) - 서측 과회전차로 확보(신유서로)	- 사업지 남측 문래북로 정비를 통해 원활한 진출입 통선체계 확보 - 남측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삭제 건의(20면) 및 차로운영방안 수립 4지 교차로 운영 - 점멸신호등 및 주행유도선 설치 - 차량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(가속차로:B=3.0m, L=22.0m, 감속차로:B=3.0m, L=22.0m) - 사업지 동측 부출입구 설치 4지 교차로 운영 - 사업지 서측 신유서로 확폭(B=14.6m~17.6m→17.6m~20.6m, L=112.0m)을 통한 과회전차로 추가 확보(B=3.0m)	-
보행통선 계획	대상지 주변도로	- 보행통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(4개소) - 사업지 동측 영등포로12길 사업지내 보행공간 확보(B=3.0m) 및 사업지 맞은편 보도 설치(B=2.0m)	-
주차계획	공동주택 지하주차장	법정주차대수 및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주차대수 확보	-

다) 환경관리계획(신설)(안)

(1)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신설)(안)

구분	계획내용		비고
환경보전	자연환경	- 생태면적률 확대를 위한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 - 조경녹지의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	-
	생활환경	- 현 지형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로 지형변화 최소화 -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(LNG) 사용 및 에너지 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제화 마련	-
	사업시행시 환경영향	대기환경보전법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, 공사장 소음·진동 관리지침서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	-
재난방지	수재해	구역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, 지구내부로 유입을 최소화으로 억제하도록 하여 홍수,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	-
	화재	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	-
	교통	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	-

(2) 환경성 검토결과

검토항목	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환경영향예측	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(또는 조치계획)	비고
자연 생태 환경	비오름 및 농·식물 상	- 비 오름 보 전 등급 향상 - 농·식물상 보호 - 자연환경 보전	○	- 비오름유형평가 4등급, 개별비오름 평가제외 등급 - 보호지역 및 보호종 등 자연환경 자산, 지정 보호수는 해당없음 -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오름유형 등급 변화 없음	녹지공간의 확보하여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	-
	녹지네 트워크	녹지·수생태 연결성 확보	○	녹지면적 III, 녹지모양 III, 내부연 결성 I, 외부연결성 III으로 평가	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, 옥상 녹화 등을 통해 녹지 확보 계획 반영	-
생활 환경	토양	토양오염 최소화	○	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	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응 수립	-
	지형· 지질	지형지질 영향 최소화	○	- 표고 5~10m 100% - 경사 5도 미만 100% - 향후 지하수위 변화와 지반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	현 지형을 고려한 건축배치 검토로 지형변화 최소화계획 수립	-
	물순환	자연물순환 유지	○	-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역임 - 공동주택 35% 이상 계획	자연지반녹지, 인공지반녹지, 옥상 녹화 등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생 태면적률 35%로 계획	-
	수질	수질등급유지 및 오염 최소화	○	- 수질 상태 확인 -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파악	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 계획 수립	-
	바람·열	- 바람길 확보 - 열 환 경 영 향 최소화	○	-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시가지 -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역임	-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 신축 건물로 바람길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 을 것으로 판단 - 옥상녹화,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열섬효과 최소화	-
	대기·질 ·악취	- 대기오염 최소화 - 악취공해 해결	○	-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상 - 악취 영향 없음	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	-
	온실 가스· 에너지	- 온실가스 저감 -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	○	-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-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-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	-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-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수립계획 -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 정연료 사용	-
	자원 순환	폐기물발생량 최소화	○	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	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적절처리	-
	소음· 진동	소음진동 최소화	○	공사시 소음영향 예상	저소음 장비 사용하여 소음진동 최소화[가설방음판넬 설치 등]	-

라) 공공주택(법적상한용적률 완화) 건설에 관한 계획

-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, 서울시에 매각(처분)하여야 한다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 이상을 공공주택(법적상한용적률 완화)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

■ 공공주택 배치계획

-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,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(동별·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)하고,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·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가 동일·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■ 주택의 규모별 비율(정비계획)

건립규모	전체 세대수	전체비율(%)	공공임대주택 세대수	공공임대주택 비율(%)		비고
				전체세대수 대비	공공임대주택 세대수 비율	
합계	777세대	100.0	201세대	25.9	100.0	-
60㎡이하	361세대	46.4	171세대	22.0	85.1	-
60㎡초과 ~85㎡이하	396세대	51.0	30세대	3.9	14.9	-
85㎡초과	20세대	2.6	-	-	-	-

<이하 여백>

5.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
추정 비례율	-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: (총 수입 - 총 지출) / 동전자산 총액 × 100% - 추정비례율 : 100.12% $\Rightarrow [(822,576,527\text{천원} - 432,333,564\text{천원}) \div 389,690,794\text{천원}] \times 100 = 100.12\%$				
	총 수입 추정	총 지출 추정	동전자산총액 추정		
	822,576,527 천원	432,333,564 천원	389,690,794 천원		
개별 동전 자산 추정액	- 공동주택 : 최근 국민은행의 매매시세 일반평균가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시세 중간가의 산술 평균액을 적용하여 추정함. - 구분소유상가 : 구분소유 상가의 실거래가를 참조하고, 층별 효용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함. ※ 본 동전자산추정가격은 개략적인 추정치로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닌 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동전자산 가액은 판리자분계획수립을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함.				
	추정분담금 산정방식 =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- (동전자산 추정액 × 추정비례율)				
추정 분담금 산출	권리자 분양가 추정액		개별 동전자산 추정액 × 추정비례율 (100.12%)	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- 추정권리자가액 (+ : 부담 / - : 환급)	
	구분	전용면적(m ²)			분양가(a)
	아파트	49.99			927,300천원
		59.99			1,115,300천원
		74.99			1,337,800천원
		84.99			1,431,700천원
		112.58			1,841,000천원
	상가	1층	527,000		
		2층	263,500		
		지하	237,000		
	※ 위 금액은 인근 사내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추정치로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닌 바, 향후 변동될 수 있음. 산출 상가의 포함된 분양가는 계약면적 10평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. ※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(아파트 포함된 분양가)는 일반분양가 추정액의 95%를 적용함.				

※ 해당 분담금은 개략적인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판리자분계획수립 시 개별 물건에 대한 동전·공동주택 감정평가, 정비사업비 산정 및 분양가격 결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※ 현재 공동주택 평균 동전자산 추정액은 전용 50.81㎡ : 약 727,500천원, 전용 61.59㎡ : 약 851,300천원이며, 상가의 경우 전체 동전자산 추정액은 약 10,972,294천원임.

※ 상기 동전자산 추정가격은 개략적인 추정치로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닌 바, 향후 변동될 수 있고,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판리자분계획수립을 위한 동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본 동전자산 추정가격은 동전자산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무관함.

6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)

7. 열람장소 :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(☎02-2670-3501),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(☎02-2635-2766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(☎02-2670-3501)로 문의바랍니다.

※ 다만, 본 정비계획(안)은 주민공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·고시되므로 제반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.

■ 붙임









